

대구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합2017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변론 종결 2022. 7. 7.

판결 선고 2022. 8. 25.

주 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4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17. 접수 제11433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3,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각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3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1 내지 4항 및 피고는 B에게 별지 6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자이며,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의 발급

1)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3. 31.부터 2018. 3. 30.까지, 채권자 D은행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D은행 E지점장에게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피보증인 C로, 보증기한 2018. 3. 30.까지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F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7,6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10. 24.부터 2018. 10. 23.까지, 채권자 F은행 김천시지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 F은행 김천시지점장에게 보증금액 7,650만 원, 피보증인 C, 보증기한 2018. 10. 23.까지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다항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시까지 갱신되어 존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C는 D은행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2020. 8. 4.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F은행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2020. 9. 12.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이하 위 각 보증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각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성립된 신용보증관계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0. 12. 17. F은행에게 69,134,329원을, 2020. 12. 29. D은행에게 152,393,236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매매계약의 체결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B는 피고와 사이에 2020. 7. 1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B는 피고와 사이에 2020. 7. 1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17. 접수 제1143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B는 피고와 사이에 2020. 7.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B는 피고와 사이에 2020. 7.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B는 피고와 사이에 2020. 7.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하 각 별지 목록 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라 한다)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0. 8. 4. 및 2020. 9. 12. C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20. 12. 17. 및 2020. 12. 29. 채권자인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B에 대한 그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위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체결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체결'은 2020. 7.

10. 또는 2020. 7. 13. 각 이루어진 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D은행 및 F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은 2020. 12. 17. 및 2020. 12. 29.에서야 각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은 2017년경 이미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성립된 신용보증관계는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시까지 갱신되어 존속하였던 사실, C는 2020. 8. 4. D은행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2020. 9. 12. F은행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각 일으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20. 8. 4.자 보증사고에 대한 D은행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사고원인란에 'C의 최종 이자지급일은 2020. 7. 2.이고 이후 2020. 8. 4.부터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그 무렵 C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업체 현황란에 '사업중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체결될 당시 아직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체결된 시점(2020. 7. 10. 및 2020. 7. 13.)은 C의 보증사고 발생일(2020. 8. 4. 및 2020. 9. 12.)로부터 불과 1~2개월 전으로서 당시 이미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인 2020. 12. 17. 및 2020. 12. 29. 원고가 D은행 및 F은행에 대해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게 된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221,527,565원(원고의 B에 대한 2020. 12. 17.자 69,134,329원의 구상금 연대보증채권과 2020. 12. 29.자 152,393,236원의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체결될 당시, B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제외하고도 타에 채무가 많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B의 무자력이 인정된다. 이미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채권자에게만 채권만족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되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관련 법리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적극재산

갑 제4호증의 11,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5, 제11호증의 7,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 당시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재 부동산' 중 연번 8 내지 11, 14 내지 21, 24 기재 각 부동산1) 이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사실2) 3) , 해당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은 2,645,194,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

나) 소극재산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7, 9, 제12호증의 1 내지 10, 제13 내지 15, 이 법원의 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U기관, V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은 합계 3,579,340,016원(= 원고에 대한 채무 221,527,565원 + V조합에 대한 채무 1,452,578,843원 +

김천시에 대한 체납채무 596,294,490원5) + W조합에 대한 채무 270,000,000원 + X에 대한 채무 203,282,982원 + Y에 대한 채무 80,000,000원 + Z 주식회사6) 에 대한 채무 15,895,889원 + 김천시에 대한 체납채무 555,520원 +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한 체납채무 7,186,84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568,780원 + AA에 대한 채무 1,048,055원 + AB에 대한 채무 4,085,052원 + W조합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 W조합에 대한 채무 240,000,000원7) + W조합에 대한 채무 256,000,000원8) + AF에 대한 채무 2,234,000원 + AG에 대한 채무 999,000원 + AH에 대한 채무 995,000원, AI에 대한 채무 2,834,000원 + AJ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 AK에 대한 채무 756,000원 + AL은행에 대한 채무 7,49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9) .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2,645,194,4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3,579,340,016원으로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B)가 수익자(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또는 채무자(B)가 책임재산인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체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매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B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고, 한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되는바, 채무자 B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B에 대해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1) 별지 1, 2,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2,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3,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를 W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W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별지 3,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M)가 진행 중인 사실, 변론 종결일 현재 아직 위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여전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나 아직

매각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이에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대신 가액반환의 일환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M)에서 추후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지급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원상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가액반환 청구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는 채무자(B)가 책임재산인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바.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를 취소하기로 하며, 한편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1, 2,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다만,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반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0) B와 피고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4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0.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17. 접수 제11433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③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0.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④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0.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⑤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0.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663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범준

판사노형미

판사김종우

별지

1) 대구 동구 H 대 236m², 대구 동구 I 대 266.4m², 대구 동구 J 대 257.5m², 대구 동구 K 대 248.8m², 경북 김천시 L 잡종지 5162m² 중 10분의 2 지분, 경북 김천시 M 답 2212m² 중 2분의 1 지분, 경북 김천시 N 답 1616m² 중 10분의 9 지분, 경북 김천시 O 답 1904m² 중 10분의 9 지분, 경북 김천시 P 답 1928m² 중 2분의1 지분, 경북 김천시 Q 답 2222m², 경북 김천시 R 답 1422m², 경북 김천시 S 답 284m², 경북 김천시 T 대 265.7m²를 의미한다.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재 부동산 중 연번 14, 15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 전인 2020. 7. 8. 이미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 당시 B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그 계약체결 일자가 매우 근접하고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재 부동산 중 연번 12, 13, 22, 23번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한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재 부동산 중 연번 1 내지 7, 25 기재 각 부동산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일 며칠 내에 B로부터 제3자로서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연번 1 내지 7, 25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과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역시 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

4) 피고는,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 당시 B가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의 각 대표자로 있으면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 추가적인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회사들의 자산은 그 각 회사들의 책임재산에 해당할 뿐 이를 B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 B가 추가적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원고의 2022.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제8쪽) '소극재산 순번3' 기재 566,294,490원은 596,294,490원의 오기이다.

6) 이하 각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이를 생략한다.

7) 원고의 2022.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제8쪽) '소극재산 순번14' 기재 290,000,000원 중 50,000,000원(2011. 9. 15.자 대여금 채권 20,000,000원 + 2018. 6. 28.자 대여금 채권 30,000,000원) 부분은, '소극재산 순번 13' 기재 200,000,000원과 중복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8) 원고의 2022.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제8쪽) '소극재산 순번15' 기재

366,000,000원 중 2019. 6. 14.자 대여금 채권 110,000,000원 부분은, '소극재산 순번4' 기재 270,000,000원과 중복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9) 원고는 B가 피고에 대해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원고의 2022.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원고는 위 변경신청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갑 제6호증의 12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위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던 중 해당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위 B 소유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설행하여 판단한다(원고의 구체적인 소유 지분은 이 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